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5. 16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4.27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.5.2.
- 다. 상정일자 : 제21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7.5.16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주택과장 이홍주

### 가. 제안이유

- 1) 기존 「주택법」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2016. 8. 12. 「공동주택관리법령」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「주택법」에서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변경하고,
- 2)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비용의 구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1)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“「주택법」”에서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”으로 변경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의2, 제8조, 제10조)

2)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근거 규정 신설(안 제4조제5항)

-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.

### 3. 검토보고 (김용범 전문위원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주택법」이 개정되고,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이 제정(2016. 8. 12)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,

○ 안 제1조 중 “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”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제1항 및 제34조”로 개정함.

○ 안 제3조 중 “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8조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”로 개정함.

○ 안 제4조의2제1항 중 “「주택법」 제43조의3”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「주택법」 제49조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2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「주택법」 제50조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3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주택법」 제81조제2항”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1조제1항”으로 개정함.

○ 안 제8조제3항 중 “「주택법」 제59조 및 제98조” 를 “「공동주택 관리법」 제93조 및 제99조” 로 개정함.

○ 안 제10조제5항제2호 중 “천재지변” 을 “제4조제1항제2호의 공용시설물 중 천재지변” 으로 개정함.

○ 안 제4조제5항은 신설조항으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근거 규정을 만들어 공동주택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이는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